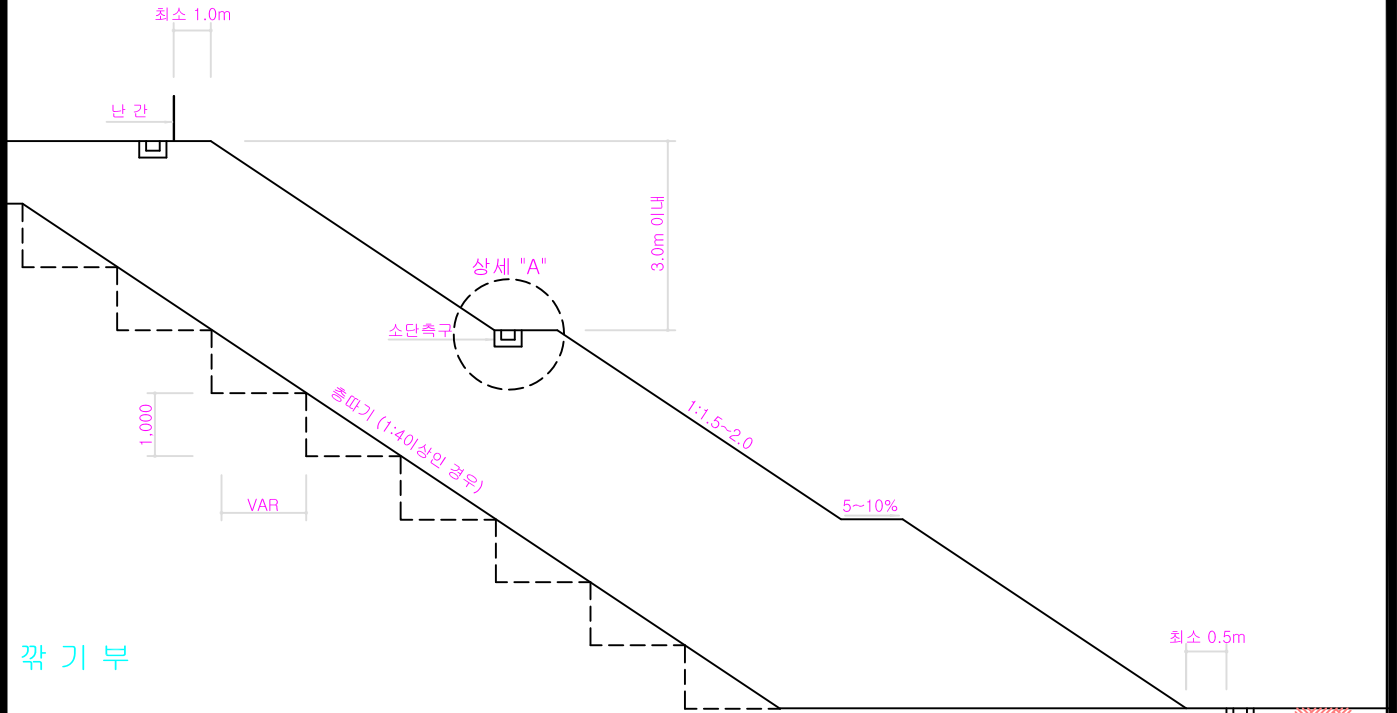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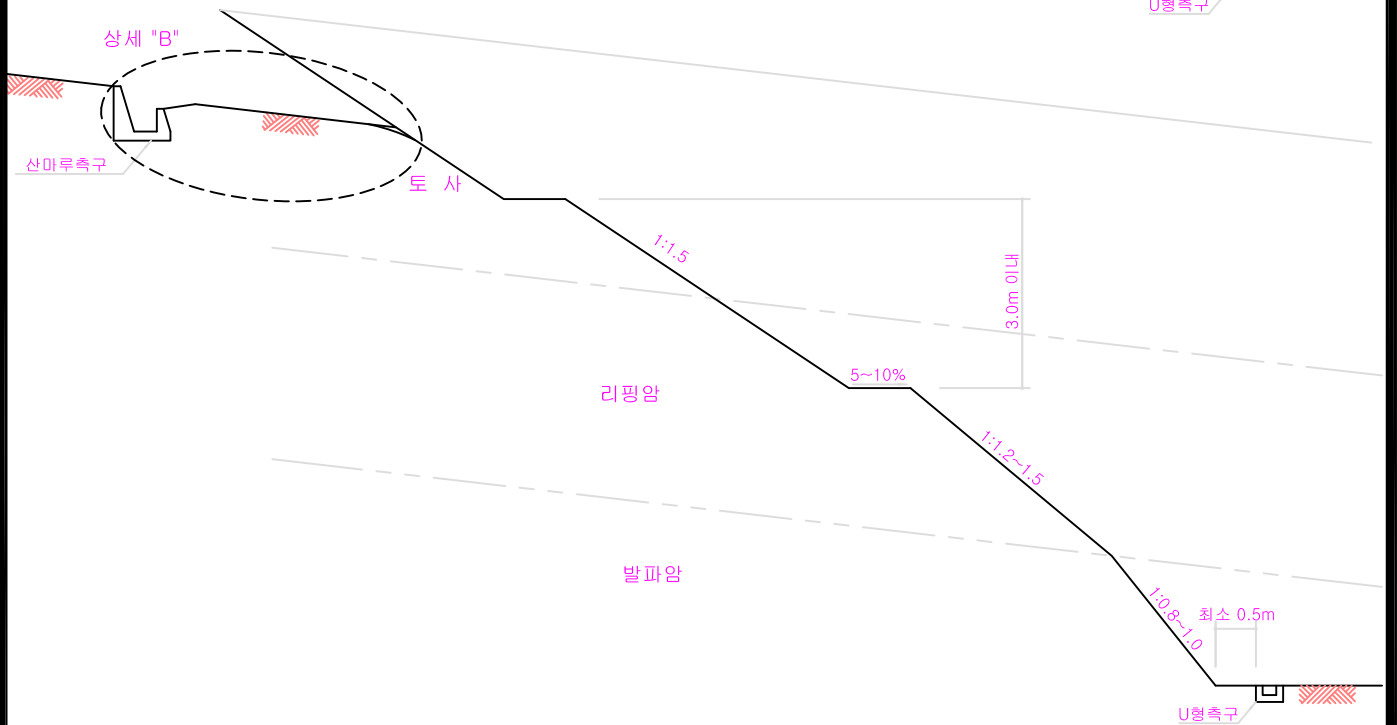


쌓 기 부



깎 기 부



※ 설계 기준 ※

- 비탈면기울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, 토질, 토양조건, 토양경도, 용수의 유무, 층리, 절리, 수목식재 여부 등을 고려 비탈면 안정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

구 분	비 탈 면 경 사			비 고
	5m이하	5m~10m이하	10m이상	
깎 기 부	1:1.5	1:2.0	발도경도	

- 비탈면 하부에 옹벽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옹벽과 비탈면 사이에 폭 1.0m 이상의 단을 만들고, 비탈면 상부에 옹벽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소 1.5m 이상으로서 옹벽높이의 1/2에 해당하는 폭 이상으로 단을 설치할 것
- 지표수나 용출수는 맹암거, 회공,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 유도배수 시킬 것

4. 소 단

- 적고 5m마다 토사의 경우 1~1.5m, 암반면인 경우 1.5m 이상의 소단 설치(단, 소단상에 조경수목을 식재할 경우 뿌리분의 크기 등을 감안한 적정 폭으로 설치)
- 깎기부에서 리핑암과 발파암 사이에는 소단을 설치하지 않음.
-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지와 접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적용하여 적고 3m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의 단을 설치(단, 비탈면의 토질·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
- 채광·도로를 제외한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5m 이상인 경우 5m이하의 간격(옹벽포함)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 설치.
 -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
 -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
 - (가)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m 이하
 - (나)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(소단의 너비는 제외)는 각각 15m 이상
- 비탈면 상부 및 하부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산마루측구 및 U형측구 등의 배수시설 설치하고 일반 소단부에는 필요시 적고 10m 마다 폭 1.5m 이상의 소단과 적절한 배수공 설치

※ 주 기 ※

- "A" 상세도는 DC_12_061_00 참조
- "B" 상세도는 DC_12_060_00 참조

토공 비탈면 상세도

None	DC_00_001_01
개 정	2013.12